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. 9. 2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. 8. 14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5. 8. 18.

다. 상정일자: 제27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25. 8. 28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행정지원과장 양성우】

가. 제안이유

- 자원봉사 관련 업무의 사회복지 정책과 연계 강화를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의 행정지원국 분장사무인 ‘자원봉사에 관한 사항’을 제5조제2항제2호의 복지동행국 분장사무로 이관

다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- 입법예고: 2025. 7.10.~ 7.30 (제출된 의견 없음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자원봉사 관련 업무의 사회복지 정책과 연계 강화를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① 주요 개정내용

- 「제4조제2항제2호」의 “지원, 자원봉사” 표현 중 ‘자원봉사’를 삭제하고, 「제5조제2항제2호」의 “지원에”를 “지원, 자원봉사에”로 변경함으로써 문맥상 정리와 행정기능의 명확화를 도모함.

6.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의 행정지원국 분장사무인 ‘자원봉사에 관한 사항’을 제5조제2항제2호의 복지동행국 분장사무로 이관하므로 행정기구의 명칭과 기능 중 중복·혼동 소지가 있는 표현을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‘자원봉사’ 관련 기능이 제4조에서 삭제되고 제5조에서 보완됨에 따라, 기능 배분의 명확성 제고와 실무 부서 간의 협업구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